

붙임 2

서류 발급처 및 주요 Q&A

| 구 분 | 서 류 명 | 발 급 처 | 개 수 | |
|--|--|--|--|----|
| 사업자 등록확인 | ▶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(업태 : 제조업 必) |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 | 1부 | |
| 소공인 확인서류① | ▶ (권장)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, 주업종 : 제조업 必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://sminfo.smba.go.kr) (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) | 1부 | |
| ↳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을 경우,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모두 제출필수 | | | | |
| 소공인 확인 서류 ② | ▼ 상시근로자 ▲ 확인서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▶ 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|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ps.or.kr) (1577-1000) | 1부 |
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- 최대 12개월분 <input type="checkbox"/> (직전사업년도 업력 12월이상) 직전사업년도 12개월분 <input type="checkbox"/> (업력 12월이상이나 직전사업년도 12개월 미만) 최근 12개월분 <input type="checkbox"/> (업력 12월미만)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, <input type="checkbox"/> (업력 1월미만) 산정일 현재인원 | | |
| | |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 | 택1 |
| | | ▶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|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ps.or.kr) (1577-1000) | |
| | | ▶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▶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| | |
| | ▼ 매출액 ▲ 확인서류 | ▶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|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 | 택1 |
| | ▶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|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 또는 민원24 (www.gov.kr) (1588-2188) | | |

주요 Q&A

①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는 경우 대체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) 매출액확인서류와 2)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입니다.

- * 매출액확인서류 청구의 목적 : 업종 확인
- *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청구의 목적 : 소상공인 여부 확인(소공인의 경우 10인 미만)

②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대체 서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
제출서류 목록

- [매출액확인서류_최근 1년] ① 또는 ②+③**
- ①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→ 제품매출, 상품매출, 기타매출 등 확인이 가능하고 **반드시 제품매출이 높아야 제조업으로 구분됩니다.**
 -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→ 국세청 발급서류로 업태 확인 가능
 - ③ 부가가치세신고서 → 세무사 확인 서류로 부가세 확정 신고 전/후 발급되나 업태 확인 가능
→ ②+③ 서류를 모두 확인해서 제조업 여부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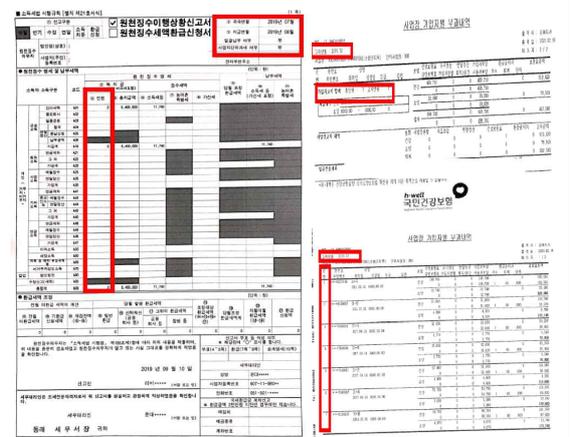
제출서류 예시



[상시근로자 수] ① 없을 경우와 ② 있을 경우

- ① 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*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ps.or.kr), 1577-1000
- ② 아래의 서류 중 택1(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발급)

| 구분 | 발급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▶ (월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(국번없이 126) |
| ▶ (월별)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|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ps.or.kr) (1577-1000) |
| ▶ (월별)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| |
| ▶ (월별) 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| |



※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출 방법(2020년 6월 발급 기준)

□ (직전사업연도 업력 12월 이상) 직전사업연도 12개월분

→ 2019년 1월 ~ 12월 사업을 영위하여 2019년(직전연도)에 업력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2019년 1월 ~ 2019년 12월간의 서류를 확인

□ (업력 12월 이상이나 직전사업연도 12개월 미만) 최근 12개월분

→ 2019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6월까지의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12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2019년 5월 ~ 2020년 6월간의 서류를 확인

□ (업력 12월 미만)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

→ 창업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 2019년 11월 창업일 경우, 2019년 11월 ~ 2020년 6월간의 서류를 확인

□ (업력 1월 미만) 산정일 현재인원

→ 창업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 2020년 5월 창업일 경우, 2020년 6월 발급 서류로 확인

<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> <건강보험월별가입자부과내역>

|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
| 사업장번호 | 연월일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
| 구분 | 고지액 | 연고지액 | 월고지액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
| 합계 | 0 | 1,738,000 | 0 | 1,738,000 | 0 | 1,738,000 | 0 | 1,738,000 | 0 |
| 월당액 | 0 | 96,800 | 0 | 96,800 | 0 | 96,800 | 0 | 96,800 | 0 |

| 건강보험월별가입자부과내역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
| 사업장번호 | 연월일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
| 구분 | 고지액 | 연고지액 | 월고지액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 월 | 세월 |
| 합계 | 0 | 1,738,000 | 0 | 1,738,000 | 0 | 1,738,000 | 0 | 1,738,000 | 0 |

<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> <보험료부과내역(고용, 산재)>

주요 Q&A

③ 정산 및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인께서는 수행이 완료된 후에, 아래의 정산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 서류 준비와 온라인시스템 등록을 전문기관(대한산업안전협회)에서 지원 해드릴 예정이며 시스템 등록내용을 회계법인이 검토 하는 방식입니다.

<필요서류>

1. **견적서 2부**(본견적서 1부, 비교견적서 1부) → 사전진단 시 전문기관이 컨설팅 가능
 - * 구체적인 수량,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
2. **세금계산서**(실행비용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)
 - *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
3. **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**
 - * 통장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4. **완료확인서(온라인시스템에서 작성)**
 - * 시스템에서 작성하나, 전문기관에서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 후 작성제출
5. **이체확인증(자부담금 입금 확인용, 신청인 → 공급업체)**
 - * 실행비용 전체 금액 중, 부가가치세와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신청인이 공급업체에 선납한 증빙자료
 - *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자료
 - *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 불가

④ 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(부가세 포함)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(공급업체)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함
-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,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
-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
-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,875,000원인 경우(예시)**
 - 정부지원금 지급(소진공 → 수행업체), 공급업체 이체(금액 : 5,000,000원)
 -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(소공인 → 수행업체), 계좌이체(금액 : 1,875,000원)
 - * (자부담) 1,250,000원 (부가세) 625,000원